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업무의 범위

문 무 기*

Ⅰ. 머리말

종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71조 내지 제75조는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직권중재(강제중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게 되어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마련·적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위원장의 성향·판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개선논의가 계속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제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생존필수적 서비스[1]를 제공하는 사업만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도록 노동관계법제를 개정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파업권 보장이 강화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익적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면 국민일반 등 공중의 이익은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부분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파업 시에도 최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gmoon@kli.re.kr).

1) ILO는 공무원의 공공역무,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권리분쟁사항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약(외)될 수 있다고 본다(Convention No. 87, Article 3; General Survey, para 151; General Survey, para 159). 즉, 파업권 제한의 전제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의 요건을 "진정(엄격)한 의미에서의 최소서비스" 즉, "그 정폐에 의하여 국민(일반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설정하는데 이는 곧, "생존필수적 업무"라고 할 것이다.

한의 필수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파업권과 공공의 이익[2]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동시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노사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지난 2003년 12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시 최소업무[3] 유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노조법에 필수업무의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노사협정에 의해 공익보호를 위한 핵심업무의 내용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수업무 유지의무는 공익적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널리 인정되도록 확대하며, 노동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공정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토록 제안하였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필수업무유지제도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한 후속작업 즉, 하위법령에 규정될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인 범위(핵심업무의 내용)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4]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선진 제외국의 사례와 주요 공익사업에서의 실태 특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견해를 먼저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설정 가능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공익의 개념은 사회적·역사적 변화에 따라 가변적·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및 노동관계법제의 내용과 학설, 판례 등 실무해석에서의 공통된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업무의 폐지·중단이 미치는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성, ② 일상생활과의 필수불가결성, ③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사업의 독·과점성, 파업의 동시다발성), ④ 침해 이후의 회복 가능성·신속성, ⑤ 국민경제·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3) ILO가 제시하는 결과론적 개념으로서의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는 파업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로서, 그 요건을 ① 그 정폐가 생명, 개인적 안전, 공중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② 엄격한 의미인 필수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파업의 강도·기간에 비추어 그 결과가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여건에 위해를 주는 국가 긴급사태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③ 기본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서비스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당해 서비스를 국민의 절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동으로서 최소서비스를 제한하여 파업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② 관련 사용·자단체도 사용자, 공공기관과 함께 최소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4)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기본권(파업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파업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업무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제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실태

1. 개 요

선진 제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민(일반)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필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정법적 규정도 찾아보기 힘들다. 즉, 모든 나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공의 생명, 신체, 건강과 관련된 생존필수적 사업 영역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두되 최소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정법적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도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 및 노사관계의 상황에 따라 실정법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노사 자율적으로 최소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토록 하고 있다.

2. 정기노선여객운송사업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그 외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영국 및 일본은 최소업무제도가 없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긴급조정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사업	방식	구체적 예(합의·조정 결과)
스페인	지하철, 시내버스, 철도, 항공	노사 간의 교섭 → 정부	– 지하철과 시내버스 : 혼잡시간대 50 ~ 60%, 기타 시간대 15 ~ 20% – 철도 : 각 행선지마다 하루에 기차 한 대의 비율
이탈리아	버스, 지하철, 전차, 기차, 비행기, 고도(孤島) 연결 수단인 해상교통	노사 간의 교섭 → 최소업무보장위원회의 조정(업무의 50%와 인원의 1/3이 상한선)	– 지역대중교통 : 06 ~ 09시 및 18 ~ 21시 사이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 철도 : 장거리 연계의 대부분과 교외거주자의 이동 보장 – 항공 : 07 ~ 10시 및 18 ~ 21시 파업 금지. 섬들 간의 연계 보장. 상당수의 국제선 보장. 결국 약 절반의 비행편수 보장 – 해상운송 : 큰 섬의 경우 제운송수단의 동시파업금지 규정. 작은 섬의 경우 시간대를 나누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장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퀘벡주 및 그리스에서 최소한의 업무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입법례가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에 준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있다.[5] 구체적으로는 의료사업은 물론 혈액 및 이식을 위한 장기(부산물), 의약품의 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집중·긴급치료업무(긴급환자후송 포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사업	방식	구체적 예(합의·조정 결과)
퀘벡	- 앰뷸런스에 의한 수송 - 보건 -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혈액이나 부산물 혹은 인간 장기의 수집, 운반 및 분배	노사의 교섭 → 필수서비스위원회	- 작업반별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함. 사업장에 따라 55~90%까지 다양 -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이 작성한 필수서비스 목록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함. ·치료 및 긴급 치료팀의 정상적인 기능 ·사업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규정들이 적용될 기간(주말, 휴가 등) ·각 작업반의 인원수
그리스	- 병원에 의해 수행되는 보건 업무의 제공	노사의 교섭 → 노동위원회	- 근로자의 30~50%가 최소업무 유지를 위하여 파업 제한 가능 - 2003년 공공병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POEDIN은 병원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의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를 정했다. 그 중에서 특히 간호사와 관련해서, 각 진료과당 한 명의 간호사, 120명의 환자당 1명의 간호사, 각 외과 병동당 1명의 간호사와 1명의 운반인, 마취에 대해서는 1명의 간호사, 응급실의 경우 2명의 간호사, 외래진료 업무의 경우 1명의 간호사, 병상이 300개 이하인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1명의 간호사를 정하고 있다.
스웨덴	사람의 생명 관련	단체협약	-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발생케 하는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예컨대, 구급차 운전수나 핵심적인 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간호사처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각종 에너지 생산·공급사업

통상적으로 기본적(일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에너지(특히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을 규제하는 법규를 두는

5) 노사 교섭을 통하여 최소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결렬시 사용자의 지명권이 행사되며, 정부 지침은 일요일 근무에 준하여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경우도 있지만(스페인·벨기에), 실제로 파업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탈리아·벨기에 등). 다만, 포르투갈은 "민간인 징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핀란드는 "보상금제도"를 통해 파업에 대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총괄적으로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석유정제·공급에 대해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두는 경우는 스페인·그리스 정도이며, 집단에너지(증기·온수)에 대해 명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당 사업	방식	구체적 예(합의·조정 결과)
스페인	전기, 가스, 석유	특별법	- 전기, 가스, 석유의 공급 유지를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파업권 행사 가능
이탈리아	일차적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	노사의 교섭 → 최소업무보장위원회의 조정	- 전기, 가스 등의 공급 부문에서는 파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포르투갈	연료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및 광산업	노사의 교섭 → 노동부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	- 1974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민간인 징발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나 산업분야(운송, 수도 공급, 전기 생산 및 공급 등)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부처의 장관은 징발을 결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리스	전기 및 가스의 생산과 공급, 석유의 생산과 정제	노사의 교섭 → 노동위원회	-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구체적 내용 미파악)
핀란드	에너지	2003년 8월 27일 법	-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하는 회사는 12시간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
벨기에	가스와 전기의 공급 및 핵발전소의 유지를 담당하는 민간기업(공공부문의 경우 최소업무 관련 법규정이 없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	1948년 8월 19일 법	- 노사동수위원회에서 필수적 수요를 충족하거나 긴급한 작업을 실행하거나 불가항력 또는 예상치 못한 필요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 또는 정리해고 시에도 제공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 - 이와 같은 기업들에서의 파업 발생은 비교적 경미하며,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사동수위원회에 의하여 제공되는 최소업무가 이용자, 기업, 정부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
프랑스	전기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지침서 "베나노트"	- 파업시 업무 유지에 관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최소업무 유지 송·배전 감소는 사실상 불가능 - 80년대 말 송·배전 감소를 수반한 파업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뒤 송·배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5. 기타 주요 공익사업

먼저, 수도 및 오·폐수처리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존필수적 업무영역으로 인식하여 파업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유지업무에 대한 실정법적 규율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또 통신 및 우정사업에서 법령상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편업무에 보다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네덜란드·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신서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편관련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우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서신뿐 아니라 필요시 최소한의 소포(우편환·수표 포함)도 포함되고 있으며, 통신의 경우에는 주로 전화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최근 중앙은행의 파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프랑스에서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약 17% 정도의 근로자가 이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Ⅲ. 주요 공익사업별 실태

주요 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즉,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업무에 대한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구분	사용자측	노동조합측
철도사업	관제실·기관사	관제실·기관실이 중요업무이긴 하나 핵심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지하철사업	전동차 운전업무, 매표 및 승객안내업무, 검수 및 정비업무, 열차운전정리 및 수송통제업무, 시설통제업무, 시설업무, 철도토목 업무, 설비업무, 전기업무, 신호통신업무 등 전반적 업무	전동차와 관련된 업무

6) 프랑스에서는 중앙은행(조폐사업도 포함)의 파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최소업무 유지제도도 없다. 그러나 2006년 11월에 파업이 발생하여, 두 곳의 조폐창에서 40%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바 있는데, 중앙본점에서는 18%, 각 지점에서는 15%가 파업에 참가했다. 전체적으로 약 17%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파업참가율은 경영진의 수치에 따른 것이며 노동조합은 이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업 구분	사용자측	노동조합측
항공운수사업	조종업무(운항승무원), 객실안전 및 서비스업무(객실승무원), 정비업무(정비사), 운항관리, 종합통제업무(운항관리 담당직원), 공항여객/화물 운송담당업무, 항공예약업무 등 항공운송관련 업무 전반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업무는 없음(조종사노조).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이 운송분담률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자료를 통해 최소한도로 설정되어야 함(○○항공노조).
수도사업	정보관리업무, 수돗물 공급업무, 전기 공급업무	수돗물 공급업무 다목적댐관리업무는 핵심업무일 수 없으나, 기상특보발령 기간동안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
전력사업	송전, 배전, 영업, 통신 등 전반적 업무	송변전업무, 배전중 일부업무
발전사업	특정하기 어려우며, 전반적 업무	전력의 생산운전 중 일부 업무
가스사업	천연가스 제조·공급업무	천연가스 제조·공급업무
통신사업	고객시설(AS), 초고속 전송, 고객서비스, 네트워크 업무 등 '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체업무	현재 협정근로업무인 통신소통에 필요한 최소업무(경비·기계설비·전력실 및 과금담당원 등)로 충분
우정사업	택배, 금융업무, 통상우편업무 등이 핵심업무일 것이나, 파업시에는 통상우편업무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	특급서비스(국제특급, 국내특급), 익일특급, 소포업무, 통신업무
은행사업	한은 금융망 전산시스템 운영, 통화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물 및 금융경제여건 분석 업무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 전반	전산업무중 일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업무, 금융통화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외화자산 운영 업무 등
병원사업	한 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모든 부서가 포함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일부 부서에 대해 파업시 응급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핵심업무를 획일적으로 설정할 수 없음.
혈액공급사업	채혈(헌혈 업무), 검사, 공급 등 혈액공급을 위한 전반적 업무	수혈용 혈액공급업무
석유정제사업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모든 공정의 업무	모든 공정의 업무라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
석유공급사업	본사의 중앙통제실, 저유소, 가압소 업무	핵심업무가 없음(노조원들이 해당업무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핵심업무 범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사업(장)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영역 및 그 구체적인 핵심업무를 결정하거나, 감축될 수 있는 업무총량 내지 소요인력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노사간 마찰·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노사간 마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오로지 노사간 자율로써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구체화하도록 방기(放棄)하는 것은, 최소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그다지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필수유지업무의 설정기준에 대해 법령으로써 제시하는 수준이 지나치게 상세할 경우에는 노사자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사업영역에서 필요한 핵심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당해 사업(장)의 노사가 가장

잘 이해·파악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국 법규범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제시와 노사간 자율결정의 영역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등과 같은 중립적·객관적 분쟁조정기구가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토록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필수장치라고 하겠다. 특히, 그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간 의견조율 기능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1. 기본원칙

먼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은 그 정·폐가 국민 일반 또는 일부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격한 의미로서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즉, "생존필수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경제 내지 공공질서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최소화하여야 할 책임"은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노·사·정 합의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기본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업시에도 공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업무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상에 포함되는 필수유지업무라 하더라도 그 "유지의 정도"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일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생존필수적 업무"로서 파업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가까울 정도로 곤란"하며, 업무 특성상 "연속공정의 성격"을 갖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효한 파업(즉, 업무의 정폐 내지 업무량의 상당한 축소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매우 미미한 수준의 업무축소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을 통한 여타 업무만의 파업 또는 필수유지업무를 포

함한 업무의 상당한 축소를 동반하는 파업"이라는 구도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수 있으며(즉, 명분상의 파업 내지 노조의 주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파업만 가능한 정도), 이는 곧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설정(즉, 법제화를 통한 명시)도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해 서비스의 정폐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일정부분 가능하거나 평상시 업무량의 상당한 축소운영을 동반하는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유사서비스"에 의한 보완·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가까운 경우에는 필수업무유지 범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유지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상의 업무를 노동관계법에서도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법규 준수에 착오가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파업시 유지되는 핵심업무의 범위

1) 철도 및 지하철운수사업

먼저,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핵심업무는 대체로 운전(조종), 관(통)제(운행관리, 통신·신호), 정비·점검, 여객지원 등의 업무가 파업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철도 및 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의 차량운전업무, 차량정비(경정비/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중정비는 제외), 사령업무, 시설 및 설비, 전기 및 통신업무 등이 핵심업무로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기노선여객운수의 개별적·구체적 업무는 연속공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간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크고, 각종 운송수단의 고속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업무만을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파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혼잡시간대(명절·연휴, 출·퇴근 시간대 등)에 정상근로에 유사한 정도의 업무총량을 지정(예를 들어, 60~70%)하고 이를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간·벽지 또는 단독운송노선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업무총량(예를 들어, 평상시의 1/4 수준)을 정하여 이를 파업시에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제반 운송수단의 동시·다발적 파업(모든 운송수단의 동시파업 내지 버스와 지

하철 등 유사한 성격의 운송수단이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와 같이 2~3개 운송수단의 동시파업 등)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기가 오히려 힘들거나 현실과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승객의 이동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2) 항공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의 핵심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개별항공사의 업무에서는 운항서비스(조종)업무, 정비업무, 운항관리 및 통제업무, 객실서비스업무 등이 법령에 명시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공운수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공항공사의 업무에서는 시설단의 항공등화팀·통신팀·항행정보시설팀·ILS팀·레이더팀, 항로시설본부의 시설팀·통신팀·전자팀·전산팀, 항공무선표지소 등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 핵심업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보안검색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명절·연휴는 물론 혼잡시간대(이·착륙 집중시간대 등)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유지되어야 할 업무의 총량(예를 들어, 50~60%)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독운항노선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업무총량(예를 들어, 평상시의 1/3 수준)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반 운송수단의 동시·다발적 파업(모든 운송수단의 동시파업 내지 철도(KTX)와 (고속/시외)버스, 선박 등 유사한 성격의 운송수단이 동시에 파업하는 경우와 같이 2~3개 운송수단의 동시파업 등)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한편 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철도 및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승객의 이동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3) 수도사업

수도사업은 국민대중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생존필수적 사업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수(맑은 물)를 공급하는 일체의 기술적 업무영역(원수의 취수에서 출발하여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이르는 전 영역)"을 필수유

지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마철 등 홍수기의 다목적댐 수위조절 등의 업무 역시 생존필수적 업무로 보아야 하지만, 일상적인 시기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업·농업용수의 공급은 생존필수적 업무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할 필수업무의 범위로는 수돗물공급업무(수처리공정관리직, 수질관리직, 배출수처리직, 기전설비관리직 등의 업무), 정보관리업무, 전기공급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목적댐 관리업무의 경우에는 기상특보발령(홍수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수도법 제26조의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급수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도사업의 업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업무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크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법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의 범위(예를 들어, 평상시의 70~80%)를 정하도록 하되, 공정·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규모 등 구체적으로는 노사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할 때에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각 공정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 등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4) 전력사업

먼저 전기의 생산(발전) 및 공급(송·배전 등)은 그 서비스의 성격상 생존필수적 업무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는 현대인의 모든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급의 중단 내지 불안정성은 각종 설비 및 안전장치의 정지 내지 결함·오작동으로 이어져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상 외부(인근국가)로부터의 대체·보완의 가능성이 없으며, 전기라는 에너지의 특성상 연속공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외부로부터 전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전력부문에 대한 파업은 다소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사실이 주는 시사점도 크다.

따라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통신, 중앙통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최종소비자 지원 등 업무 전반이 핵심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사이클·전압 등의 허용치 내에서의 유지)로서 계속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인

력을 일정한 범위(예를 들어, 전체 인력 또는 각 업무별 기술인력의 50%)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법령으로 명시할 경우, 전력부문에서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전부문에서 배전운영실·배전사령실, 설비고장 긴급복구를 위한 배전공사, 고객고장 긴급복구를 위한 내선계기 업무 등이 있다. 송변전부문에서는 송변전 급전운영, 유인변전소 운전, 무인변전소 운전, 무인변전소 순회점검업무 등이다. 또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전력통신망 유지관리, 전력계통 운전설비, 무인변전소 보안설비, 고객센터 및 종합상황실 업무 등이며, 전산부문에서는 전산실 운영, 한전백업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사업에 있어서는 업무간의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크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법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예를 들어, 예비전력 내지 여유전력량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축소하는 등)를 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각 시설·업무 및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 등)은 노사간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5) 발전사업

발전부문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업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화학부, 정보통신부, 발전부, 기계·전기부, 계측제어부의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발전소 교대근무자 보직별로 살펴보면, 조종과장, 터빈제어반 운전원, 스위치보드 운전원, 터빈 운전원, 터빈보조기기 운전원, 미분기 운전원, 보일러 운전원, 보조보일러 운전원 등의 업무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사업에 있어서도 업무간의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크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법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예를 들어, 예비발전 내지 여유발전량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축소하는 등)를 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각 시설·업무 및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 등)은 노사간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직접 관련된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6) 가스사업

가정용 도시가스(LNG)의 안정적 공급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의 생명·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대체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산업용 및 발전용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연속공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용도별 통제가 쉽지 않은 난점도 존재한다(다만, 용도별 통제가 용이하다면 가정용 가스공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가스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운영본부의 중앙통제팀 업무, 생산기지의 안전관리실·기술총괄팀·설비운영팀·설비보전팀의 업무, 공급지사의 안전 관리실·설비운영팀·설비보전팀, 지역사무소의 천연가스 공급망 운영관리업무 및 정비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업무에서는 가스공급 및 공급배관에 관련된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안전관련업무(가스공급, 순찰, 정비보수, 상황실 운영, 공급전 안전점검, 공급시설 검사, 사용시설 검사, 비상체계유지 등)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순도, 압력 등의 허용치 내에서의 유지)로서 계속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인력을 일정한 범위(예를 들어, 전체 인력 또는 각 업무별 기술인력의 50%)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가스의 인수·생산 및 공급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통신사업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영역이 넓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익사업적 성격이 강한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인 유선통신망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KT)에는

대체가능성 등 시장의 원리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유지업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 3 및 제44조의 4에서 규정하는 "통신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경우와 달리 통신사업이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실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적인 유·무선통신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로서, 시설관리(사고접수, 유지·보수 포함) 및 통신시스템의 종합적 모니터링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유지인력의 비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는 시내전화망·시외전화망·국제전화망의 교환, 전송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업무, 초고속인터넷 데이터망 유지 및 보수 업무, 위성통신망(위성전용망, 위성이동중계 등) 및 국가통신망(청와대, 남북, 민방위, 군통신망)의 유지관리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에서 관련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8) 우정사업

우정사업에서는, 신서독점권을 규정한 우편법 제2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인 통상우편업무를 원칙적인 필수유지업무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핵심업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기본우편업무(일반통상우편업무와 소포업무 포함, 내용증명·등기우편 제외)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우편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처리 가능한 특급업무와 통신업무 및 도서·산간벽지에 위치한 일부 우체국의 금융업무 등에 대해서도 노사간 구체적인 유지 범위를 설정토록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정사업의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파업시 전체 업무 가운데 일정 수준(예를 들어, 평상시의 3/4)으로 감축할 것인지 또는 전체적인 유지업무의 정도에 따라 필요인력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사실

상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위적으로 해당 업무를 분류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지인력의 수준은 인력관리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되, 한국은행측이 제시한 수준(전체의 1/3)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달리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법령으로 설정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업무의 범위에는 기획국, 전산정보국, 조사국, 경제통계국, 금융안정분석국,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결제국, 발권국, 국제국, 외화자금국, 안전관리실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0) 병원사업

의료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성격은 본질적으로 "생존필수적 업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가운데 병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일정부분 작동하고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성의 원리가 작동되는 업무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응급의료업무"를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도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장원리하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응급의료업무"의 경우에는 생존필수적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응급의료업무로는 응급실(환자 및 이식장기·부산물 후송 포함), 중환자실(암병동 내 중환자실 포함), 응급을 요하는 수술실·마취과·검사실, 분만·회복실 및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응급약제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상 수준의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지인력의 범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병원마다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 기타 일상적인 의료업무 및 지원업무(행정, 시설지원, 일반급식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지인력(예를 들어, 전체의 1/4 정도)을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지역(환자의 긴급후송이 가능한 특별시·광역시의 구 단위, 일반시 단위 등) 내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금지시키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며, 도서·산간벽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특정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1, 2, 3차 각급별)인 경우에는 파업을 제한(예를 들어, 최소한의 의료업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의 파업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원사업의 "생존필수적 업무성"은 어디까지나 응급환자, 현재 입원·진료중인 환자 및 중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파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공

격적·선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영리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신규환자의 수용 등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사업에 있어서도 업무간의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크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예를 들어, 휴무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40~50% 정도)를 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각 시설·업무 및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 등)은 노사간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병원사업을 통한 의료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수행되는 의료행위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11) 혈액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성격 역시 본질적으로 "생존필수적 업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액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독점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의 사용자인 각급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혈액공급업무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혈액공급사업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한 제반업무(채혈, 검사, 관리 및 공급(수급연결망 포함) 등)가 필수적 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혈액공급사업을 혈액의 수요자인 일반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혈액자급률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핵심업무를 보면, 간호팀의 헌혈자선별·채혈일반·성분채혈업무, 검사팀의 혈액검사·혈액형검사·수혈전파성 질환 검사업무, 제제팀의 혈액제제의 제조·표지부착업무, 공급팀의 수송 및 보관, 입·출고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혈액공급 관련업무 사이의 연계성으로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를 법령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한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정한 업무유지 수준(예를 들어, 1일 혈액공급능력의 50~60%에 상응하는 정도)을 설정하되, 전체 인력 가운데 구체적 인력의 총량(당해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의 규모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혈액공급을 위한 관련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혈액 및 혈액제재의 공급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도 있겠다.

12) 석유정제사업

원유의 정제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은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보다는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운수, 난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특정 지역 내 또는 업계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하지 않는 이상 대체가능성도 일정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속공정성이 강하고 안전을 위한 설비의 유지·보수, 회복의 난이도 측면 및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용에너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유의 정제를 위한 기술분야의 제반업무 및 설비의 유지·보수업무, 송유 및 공급시설에 대한 운전제어 및 입·출하를 관리하는 통제실(중앙, 각 저유소) 업무를 핵심업무로 볼 수 있겠다.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설정하자면, 우선 석유정제사업에서는 안전환경업무종사자(안전검열원, 주간안전원, 안전관리원/서기, 안전기술원, 안전담당 교대근무 중 해당조, 소각로운전원, 연구실험원, 폐기물관리원, 환경관리서기/환경관리원, 주간환경운전원, 환경담당 교대근무 중 해당조), 교대근무자중 해당근무조원(Board operator, Field operator, 반장), 필수정비요원(장치, 기계, 계기, 전기, 검사정비원, 기술정보관리원/서기, 정비계획원, 중장비원, COST 관리원), 물류센터업무 종사자(수/출하, 보일러운전, 전기/영선, 소방/안전) 등의 업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정제사업에 있어서는 연속공정성이 상당히 크며, 업무를 무리하게 구분하고 법령을 통해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법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예를 들어, 평소 정유능력의 1/3 수준)를 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각 시설·업무 및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를 예를 들어, 전체 인력 또는 각 업무별 기술인력의 20~50%로 정하는 등) 노사간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석유정제사업을 위한 핵심업무 상호간의 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석유정제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석유공급사업

석유공급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중앙통제실의 전국송유관 운전제어 업무

와 송유스케줄·품질·재고관리 업무, 각 저유소의 제품 입/출하관리 업무와 제품재고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이 핵심업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공급사업도 연속공정성이 상당히 크며,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법령상 필수유지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법규범의 현실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예를 들어, 평소 송유능력의 1/3 수준)를 정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각 시설·업무 및 그에 따라 소요인력의 규모를 예를 들어, 전체 인력 또는 각 업무별 기술인력의 20~50%로 정하는 등)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석유공급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구체적인 법령에의 명시 곤란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의 이동·공급에 관한 기술적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V. 맺음말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종래 유지되어 온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제도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발생한 분쟁상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사관계 공멸(lose - lose)의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적 사업 영역에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는 파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근로자에게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노사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상생(win - win)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정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노사 모두에게 쟁의행위 상황에서도 자율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노력의무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국민일반 역시 자연권의 하나인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피해·불편을 감수하면서, 이해관계자로서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노사관계제도 선진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KLI

<참고문헌>

국제노동기구 엮음(2003),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문무기(2005), 「파업시 최소서비스 유지의무: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 『국제노동브리프』 3(9),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6),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_____(2005),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방안』,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_____(2005),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_____(2003),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Assemblée nationale(2003), *Le service minimum dans les services publics en Europe*, Rapport d'informa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No.1274.

Maria Vittoria Ballestrero(2004), "La grève en droit italien", *Droit social*, p.386.

Sénat(1998), *L'organisation d'un service minimum dans les services publics en cas de grève,* Rapport de Sénat, No.194.